

심 사 보 고 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4
----------	-----

2017. 10. 24(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3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출연 예정금액 : 120,663천원(도비 100%)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804,417,357천원 $\times 1.5/10,000 = 120,663$ 천원

☐ 출연계획(단년·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17년			2018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도비(100%)	118,009	118,009	0	120,663	2,654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보다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이나 학술행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충청북도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안번호	제 694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359 회)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29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694
----------	-----

제출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출연 예정금액 : 120,663천원(도비 100%)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804,417,357천원 $\times$ 1.5/10,000 =120,663천원

☐ 출연계획(단년·반복사업)

(단위: 천원)

구분 (기준보조율)	2017년			2018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도비(100%)	118,009	118,009	0	120,663	2,654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요구서

주관부서	세정과 (세정팀)	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태선	이강근	이영태	220-2753

기 관 명	o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o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현원/정원) 55명/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 연 사 업 비	o <u>출연 예정금액 : 120,663천원</u> o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 (기준보조율)</th><th colspan="3">2017년</th><th rowspan="2">2018년 (C)</th><th rowspan="2">증감 (D=C-A)</th></tr> <tr> <th>계(A+B)</th><th>당초(A)</th><th>추경(B)</th></tr> </thead> <tbody> <tr> <td>도비(100%)</td><td>118,009</td><td>118,009</td><td>0</td><td>120,663</td><td>2,654</td></tr> </tbody> </table>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구 분 (기준보조율)	2017년			2018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도비(100%)	118,009	118,009	0	120,663	2,654
구 분 (기준보조율)	2017년			2018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도비(100%)	118,009	118,009	0	120,663	2,654															
출 연 필 요 성	o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o 「지방세기본법」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중 평)	o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o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o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첨부자료	1.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2. 출연대상 기관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1.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 이사회 결산감사 및 외부기관 경영평가 의견

- (이사회 결산감사) 2016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 예산에 따라 이루어졌음. 연구결과물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확충을 위한 수탁과제 확보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 수입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경영평가) 정책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지방세 연구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비롯하여 지방세제 개편이나 지자체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논리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지원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전문교육 콘텐츠를 제공, 지방세 법령제공시스템(OLTA)을 통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사례, 유권 해석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 서비스의 복합적 역량을 강화하였음. 단계적으로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연구의 시너지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평가 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당연직감사, 선임감사, 연구원장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시행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 반영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출연금 요구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C)	2018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실과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118,009	120,663	120,663	-	2,654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 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2. 출연대상 기관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152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20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2011.2 설립등기, 2011.4 연구원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17.9월 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 파견	
	55명		30명 (원장-, 부원장-, 경영본부장1, 연구위원17, 사무직12)	25명 (위촉연구원16, 파견공무원5, 사무직4)	
임원현황 (‘16.9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공석>			
	부이사장	송광운	광주광역시 북구 구청장		2017.02.28.~2018.02.27.
	이사(원장)	<공석>			
	이 사	최 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김종효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신상열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우미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이범석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17.02.28.~2018.02.27.
	이 사	박진두	전라북도 임실군 부군수		2017.02.28.~2018.02.27.
	이 사	이재승	대전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7.02.28.~2018.02.27.
	감 사	김성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옥형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38,236 (설립이후 ‘16년까지 지자체 출연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8,723 (자산 총액)
	예산액 ²⁾	7,518	8,406	9,986	9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7,198	8,276	9,551	8,623 (자본금 + 이익잉여금)
경영성과 (단위:억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933			6,912	2,020

3.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세정과		출연	120,663천원(도비)

□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7년 99억원) 중 96%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 예정금액 : 120,663천원(도비 100%)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천원)

합계	'11년 (설립)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570,381	51,834	51,834	81,151	85,034	80,333	102,186	118,009

※ '11~'12년 :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13년부터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 기대효과

-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